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 및 내부통제체계 강화 등 >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00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3
2.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 및 자율준수 유인체계 마련	6
3.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지위 및 역할 강화	12
4.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	20
5. 사모펀드 관련 적합성·적정성 원칙 면제대상 정비	21
6.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및 정비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6. 4. 13.
3. 회 부 일: 2026.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둬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의 2 신설).
-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와 자격,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 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준수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6항 신설).
- 바. 과태료 부과근거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함(안 제69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 현행법은 2019년 DLF¹⁾ 사태²⁾ 이후 2021년 3월 제정·시행된바,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예금·대출·투자·보장성 상품에 대한 6대 판매규제³⁾ 및 금융소비자 권리⁴⁾를 강화하였고, 2021년 5월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 의무, 숙려기간(2영업일) 등 절차적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 그런데 홍콩 H지수 ELS⁵⁾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이와 같이 판매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투자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홍콩 H지수 ELS 현장검사 결과 ('24.3.11. 금융감독원)>

- ▶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원금보존 ·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도 고위험 ELS가 판매될 수 있도록 투자자 성향분석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설계
- ▶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ELT⁶⁾ 가입이 불가한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금융회사 직원이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

1) 해외금리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F: Derivatives Linked Funds)

2) 투자자 3,243명, 판매액 7,950억원으로 총 손실액은 4,468억원

3)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4)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입증책임은 금융회사로 전환 등

5)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수익·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6) 주가연계신탁(ELT: Equity Linked Trust), 증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한 은행의 신탁상품

- 금융회사가 문서 위주의 형식적·양적 정보 제공에 치중하면서 법령에서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 데 그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이 드러남.
- 또한 ELS 검사 결과 판매사는 성과보상체계, 판매한도 관리 등에 있어 내부통제기준을 부실하게 설계·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홍콩 H지수 ELS 현장검사 결과 ('24.3.11. 금융감독원)>

- ▶ '20년도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오히려 신탁수수료 관련 영업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프로모션 등 공격적 영업을 지속
- ▶ 성과평가지표(KPI)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보다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하여 일선의 무리한 판매 여건을 조성
- ▶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상품선정, 모니터링 등 관리 미흡

- 이에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법령상 의무의 최소한의 이행을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부통제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즉 개정안은 기존의 개별 판매행위 규정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조직적 불완전판매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의 방향과도 일치하는바, 금융위원회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판단기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과태료 수준의 적정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별로 검토함.

2.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 및 자율준수 유인체계 마련

-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하였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경우 그 준수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우선하지 이니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고, 그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적인 운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개별 판매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서 이와 같은 개별 판매규제만으로는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조직적인 불완전판매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금융회사가 법령상 요구되는 설명서 제공, 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을 이행했더라도, 본사 차원의 판매전략이나 성과평가 지표가 고위험 상품 판매를 과도하게 유도하거나 소비자보호 관점의 이상징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고,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통해 이해상충을 방지하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칙·신의 성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의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경우 준수 정도에 따라 제

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관행과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영국(FCA)과 미국(SEC) 등에서도 당국에서 제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⁷⁾

□ 다만, 개정안의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거래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수용능력, 금융상품의 위험성·복잡성·비용구조, 금융회사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단순히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으로 사후적으로 판단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참고자료 1] 참조

□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의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면제 근거는 실질적인 자율준수 노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그 노력이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 한편,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안 제16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위탁자의 통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중복점검 및 책임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점검·통합점검 허용, 위탁계약 표준조항 마련 등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자구 관련 사항으로 안 제13조의2제1항의 “우선하지 아니하는 등”은 “우선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8)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노력 인정 예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행시 법령에 열거된 거래목적·재산상황 등 6가지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결합하여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상품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② 설명의무 이행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과거 손실 실현 사례 등 투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③ 법령 또는 관련 규정상 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시 관련 안내자료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배포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고 계약하는지 등을 다양한 방식(예: 퀴즈 등)으로 반복 확인 |
|--|

자료: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금융감독원, 2025.2.)

3.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지위 및 역할 강화

-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반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 및 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관리·감독 및 점검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8.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현행	개정안
	9. 내부통제기준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10.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점검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후속조치 11. 금융상품 판매동향 점검, 판매량 급증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이사회에 그 결과 보고 12.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사내이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의3(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현행	개정안
	<u>한다.</u> 1. <u>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5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u>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u> 가.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으로 한다.</u> 나. <u>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u> 다. <u>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u> 라. <u>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u>

현행	개정안
<신설>	<u>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u> <u>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② <u>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u> <u>제16조의4(겸직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u> 2. <u>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u> 3. <u>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u>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⁹⁾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지위와 역할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독립적·실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가 영업부서나 경영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부터

9) [참고자료 2] 참조

독립성을 가지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의 사전적 견제와 사후적 점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방향 수립,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에 관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관리·감독 및 점검,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 평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점검, 판매량 급증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면서, 선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한편,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의 점검 기능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첫째,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업무로 ‘금융상품 판매동향 점검, 판매량 급증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이사회에 그 결과 보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사후관리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비자보호 측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내부통제 부서¹⁰⁾와 상품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금융상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고유 업무로 한정할 경우 협업 기반의 통제체계가 약화되어 오히려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¹⁾

○ 또한 ‘금융상품 판매동향 점검’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며 영업관리적 성격이 강하므로 ‘판매절차 점검’ 등으로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이를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은행연합회 및 신탁중앙회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둘째,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겸직 금지 규정은 전문성과

10) 소비자보호,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등

11) 현재 은행권은 행내 비예금상품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상품의 판매 후 사후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판매동향, 민원·분쟁, 투자자 손익, 시장상황 급변 등의 요소를 다양한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임.

참고: 은행권 비예금상품위원회 개요 (자료: 은행연합회)

① 구성

- 위험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상품판매(기획)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

② 역할(사후관리 부분)

- 전체 비예금상품의 판매 후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심의
 - * 판매 후 실적 등 현황, 판매한도 준수 여부, 민원 또는 분쟁발생 여부, 투자자 손익, 상품의 평가손익 현황, 시장상황 급변, 실제 상품선정내역 등
- 고객피해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 마련
 - * 상품의 판매한도 축소, 판매대상 변경, 판매중단, 전담 대응팀 구성 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이나,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의 규모와 업권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신탁중앙회는 회원조합(신탁)은 감사실장이 없는 경우
실무책임자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하는데 실무책임자는 본질적인
업무를 겸직할 수밖에 없으므로,¹²⁾ 겸직금지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일정 자산규모 이하인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전년도 평균잔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겸직 금지 조
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의 개발 및 계약
체결의 주체가 아니라 판매 과정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위험 노출도 및 책임 범위가 직접판매업자와 본질적
으로 다르므로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상품
개발, 법무, 준법감시, 감사 등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직위이므로, 자격요건 중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의 범
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셋째,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해임 절차 및 자격요건

12)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경우 감사실장을 임명하도록 하나, 그 대상 중 5천억원 미만인 경우 중 상임감사를
둔 조합은 감사실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등을 새롭게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선임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에 대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직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게 개정안에 따른 요건을 즉시 적용할 경우 기존 선임의 효력, 잔여 임기 등에 대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서 적용례 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

-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6조의5(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u> <u>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구성 및 회의 개최 주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¹³⁾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의사결정의 위상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13) [참고자료 2] 참조

5. 사모펀드 관련 적합성·적정성 원칙 면제대상 정비

- 개정안은 2021년 개편된 사모펀드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사모펀드 관련 적합성·적정성 원칙 면제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적합성원칙) ① ~ ④ (생략)	제17조(적합성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금융소비자-----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적정성원칙) ① ~ ③ (생략)	제18조(적정성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	④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금융소

현행	개정안
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비자----- ----- -----. ⑤ (현행과 같음)

-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2021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기관전용·일반’으로 개편되었음에도,¹⁴⁾ 현행법은 개편 전 기준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모펀드 분류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기관투자자 등으로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면제하는 것인바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14) 2021년 법 개정 전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목적에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고 있었는데, 이를 투자자 유형을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였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⑬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6.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및 정비

-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제69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은 제외한다)</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그	6. ----- ----- ----- ----- ----- -----.

현행	개정안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7. ~ 13.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신설>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 13. (현행과 같음) 14.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자료를 은닉·폐기·누락하거나 자료의 접근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은 제외한다)----- -----. 1.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자 3.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
<u>1. ~ 7.</u>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u><신설></u> <u>1. ~ 3.</u> (생략)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생략)	<u>4. ~ 10.</u>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 ----- -----. <u>1. 제16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검직하게 하거나 검직한 자</u> <u>2.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u> <u>3. ~ 5.</u>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 제16조의6제1항-----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우선,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관련 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대리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¹⁵⁾를 한 경우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대리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현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을 재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설계사 본인¹⁶⁾ 외에 보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6) 현행법 제6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모집을 재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설계사 본인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제6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바, 설계사의 수수료 부담 지급시 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자료를 은닉·폐기·누락하거나 자료 접근을 거부한 경우¹⁷⁾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은행법」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상호저축은행법」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대부업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8) 「**은행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0)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²²⁾ 등 다수의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당국의 검사 및 자료 확보 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사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과태료 상한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
- 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 제23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5조(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각 호 생략)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여 그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입법례 >

제명 및 벌칙 규정	의무 규정	위반내용	처벌 수준
은행법	제48조 (검사)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 (금융투자 업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검사)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감독·검 사 등)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검사 등)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으로,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한도를 1억원 또는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이는 개별 업권별로 규정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통합하여 이 법이 제정되면서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일괄 상향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해진 점을 고려

한 것으로,²³⁾ 모집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는 동일하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급상품 또는 업권에 따라 과태료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⁴⁾

23)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따른 모집 질서 과태료 변경

(단위: 만원)

모집질서 주요 위반행위*	수범자	시행령상 건별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舊 보험업법·여전법	금소법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舊 「보험업법」 §95의2)	보험대리점 ¹⁾	700	7,000
	보험설계사	350	3,500
	카드모집인	- ²⁾	3,500
	투자권유대행인	- ²⁾	3,500
불공정 영업행위(편의 요구 등) (「금소법」 §20①, 舊 「보험업법」 §97①)	보험대리점 ¹⁾	700	7,000
	보험설계사	350	3,500
	카드모집인	-	3,500
	투자권유대행인	- ³⁾	3,500
부당권유 (「금소법」 §21①, 舊 「보험업법」 §97① 「여전법」 §14의5③)	보험대리점 ¹⁾	700	7,000
	보험설계사	350	3,500
	카드모집인	120	3,500
	투자권유대행인	- ²⁾	3,500
경유계약 (「금소법」 §25①, 舊 「보험업법」 §97①)	보험대리점 ¹⁾	700	3,000
	보험설계사	500	1,500
	카드모집인	-	1,500
	투자권유대행인	- ³⁾	1,500
위탁 제한, 부당 수수료 지급 (「금소법」 §25①, 舊 「보험업법」 §99② 舊 「여전법」 §14의5②2,3)	보험대리점 ¹⁾	700	3,000
	보험설계사	350	1,500
	카드모집인	120	1,500
	투자권유대행인	- ²⁾	1,500

1) 법인 보험대리점

2) 법상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 규정 없었음

3) 법상 의무는 없으며, 금투협회 자율규제(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

자료: 금융위원회

24)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따른 모집 질서 과태료 변경

(단위: 만원)

모집질서 주요 위반행위*	수범자 (대출모집인)	시행령상 건별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舊 보험업법 등	금소법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법인	_1)	7,000
	개인		3,500
불공정 영업행위(편익 요구 등) (「금소법」 §20①)	법인		7,000
	개인		3,500
부당권유 (「금소법」 §21①)	법인		7,000
	개인		3,500
경유계약 (「금소법」 §25①, 금소법시행령 §23③v)	법인		3,000
	개인		1,500
타 직판업자 금융상품 대리·중개 (「금소법」 §25①iii, 「금소법시행령」 §23③vi, 「금소법감독규정」 §22i.)	법인		3,000 ²⁾
	개인		1,500
재위탁 금지(「금소법」 §25①), 직판업자 대상 부당수수료 금지 (「금소법」 §25②)	법인		3,000
	개인		1,500

1) 법률상 의무는 없었으며, 업권 자율규제(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 금지사항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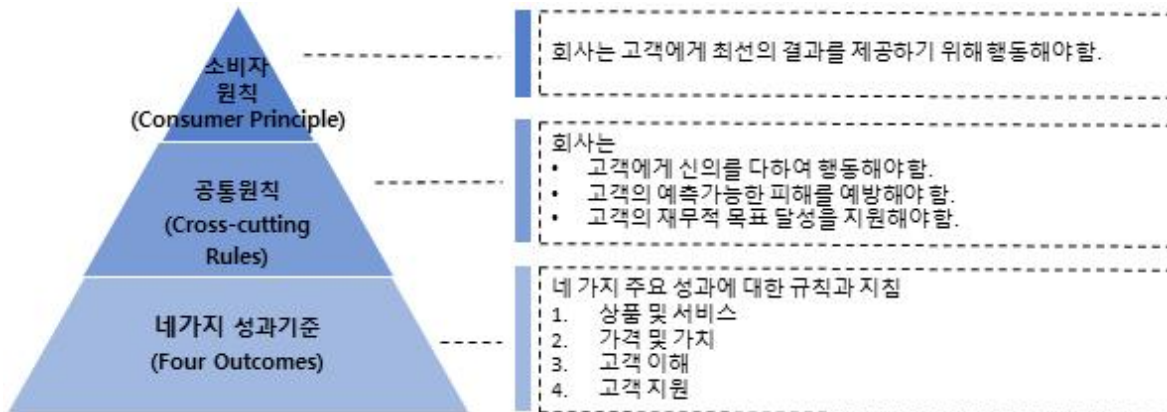
2)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1사전속의무 적용 배제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자료 1】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관련 해외 사례 (자료: 금융위원회)

□ (영국) FCA(영업행위감독청)의 「Consumer duty」

- FCA는 금융회사가 보다 엄격한 수준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규정(Consumer Duty)도입('23.7월 시행)
- 경영진의 포괄적 책임하에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결과(good outcome)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정비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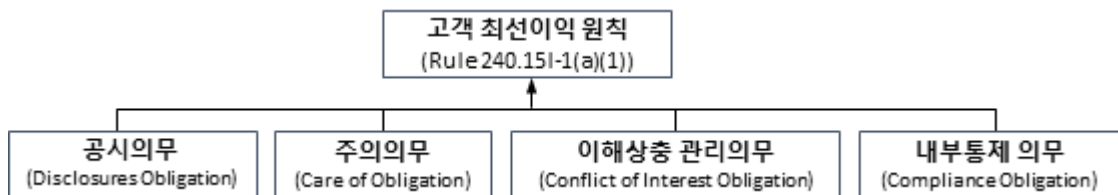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Best Interest Regulation'

- SEC는 금융투자회사의 행위규제 미흡으로 이해상충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고객이익 최우선**을 영업행위 규제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20.6월 시행)
- 금융투자회사(대리인 포함)가 개인투자자에 투자권유 시 **고객의 최선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이익이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됨
- SEC에서 정하는 **공시의무***, **주의의무****, **이해상충 관리의무*****, 원칙준수 내부통제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동 규제 준수 판단

* 서비스 제공형태, 수수료 등 비용, 투자권유 관련 이해상충 개연성 등을 서면에 의해 구체적이고 공정한 형태로 제공

** 판매직원의 리스크 분석능력 및 상품이해능력 확보, 고객의 투자상황, 기대수익, 비용 등을 고려 시 투자권유가 고객의 최선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근거 관리

*** 특정상품 연계 판매 경쟁, 실적 할당, 보너스 지급, 비금전적 보상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우려 인센티브 구조 등 관리



【참고자료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2]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조정·의결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2)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다)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라)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사)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2)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

가) 제3호 가목 1)의 나)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
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나) 제3호 가목 1)의 다)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
시에 관한 사항

다) 제3호 가목 1)의 마)에 관한 사항 중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결과

3) 나목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가목 2)에 따라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

4) 대표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및 사내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
할 것

5) 대표자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할 것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
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

-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 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 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라)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 마)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 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 아)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 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가)부터 아)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대표자 직속으로 설치할 것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의 임명·자격요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라.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

2) 성과보상체계 등에 관한 사전협의 및 개선요구 절차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5.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 계약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담당 임원·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문 의 처
02)6788-5108